'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995년10월 9일
총 무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4일 삼척시장 제출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10월 5일
다. 심사일자 : 제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5.10.9)심사 ·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이용문)

가. 제안이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 여성회관건립 예정지 1필지 1,687.8㎡매입, 하장면 역둔출장소 330㎡신축, 공설묘지조성부지 7필지 9,822㎡매입,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3필지 26,143㎡매각등 총 토지 8필지 11,509.8㎡의 취득과 3필지 11,379㎡처분 및 건물 1동 330㎡를 신축코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 : ㎡, 천원)

구 분	재 산 의 위 치			추정가액	소유자	사 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소 계	토지 10필지		1,345,450.8	497,361		
취득	남양동 347-4	대	1,687.8	335,872	국(재정경제원)	여성회관건립 예정부지
	[illegible]-2	전,답, 임야	9,822	70,802	김종하 외 11	공설묘지조성 부지
	[illegible]리 필지	임야	1,333,941	90,687	김세영	시유림집단화를 위한사유림매입

구 분	재 산 의 위 치			추정가액 (공시지가)	소유자	사 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소 계	건물 1동		330	300,000		
취 득 (건물)	하장면 둔전리 27-13		330	300,000		하장면 역둔 출장소 신축
소 계	3필지		11,379	34,167		
처 분	갈천동 2-1외 2필지	전, 잡종지, 임야	26,143 (편입면적 11,379)	34,167	엄강웅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편입 부지매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홍성용)

○ 종전까지는 매년 익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매년 정기회시 의회의결 받던것을 이번 임시회시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 취득·처분 재산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① 여성회관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의 건물노후와 면적 협소로 여성회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당초 계획에는 연면적 900평 규모로 성남동 167-8번지에 건립계획이었으나 성남동 부지가 삼척 시립박물관 건립부지로 확정되어 부득히,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의 점증으로 여성회관 부지의 신규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②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건은,
기존 역둔출장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오래전부터 건물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으로, 현위치에 지상 2층으로 출장소 및 보건진료소, 관사를 포함한 연면적 330㎡ 규모로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벽지 근무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③ 공설묘지 조성부지 매입건은,
공설묘지 조성 제1지구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진입도로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므로써, 묘지조성완료시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고, 매입대상 토지중 등봉동 산 98번지는 당초 제2지구에 설치 계획이었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이번에 소유자의 협의 불응 등으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산104-2번지, 산108번지 등 공설묘지조성부지 구역내의 일부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④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편입부지 매각건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95년9월2일 관광지조성사업이 허가됨에 따라서 효과적인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사회균형개발과 세수증대 및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써,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준용토록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예정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서 사업시행자가 시유재산 매입후 일정기한 사업에 착수치 않을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공증등 제반조치도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매년 당초계획수립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므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수시 필요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o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편입부지의 평수가 3,448평으로써 추정가액을 보면 평당 10,000원밖에 안되는데 사업자가 공시가격으로 하자고하여 싸게 파는것이 아닙니까 ?	o 관리계획에 의해 산정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이며, 실질적으로 처분시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처분토록 할 계획임.
o 초당 및 용화.장호 관광지 개발과 같이 시설등 사업을 제대로 착수치 않을시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o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부지매각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미비시에는 허가를 무효로한다는 조건부로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유지 매각또한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매각할 계획임.
o 빈약한 시 재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해수욕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치 말고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든가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	o 시유지 3,400평과 민간사업자 사유지 3,400평을 포함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기반시설조성 이후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한결과 민자유치로 개발키로 결정되었던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o 10년 넘게 예산을 투자한지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처분치말고 시민들이 수익성을 가질수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이 아닌지 ?.	으로써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이상 민자유치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o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제반 행정절차가 민자유치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의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써 98년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할 여지를 남겨 놓았음.

V.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박병근의원)

o 빈약한 시재원으로 수백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온 지역으로써 시민의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든가, 민간사업자와 제3섹타방식으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삼척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은 절대 반대함.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o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척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에 따른 문제제기로 총무위원간의 협의를 위한 정회 결과,

o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여성회관건립예정지 등 3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삼척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은 보류키로 의결함.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